

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

우리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중인 아래 구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제한지역을 변경하고자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후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7월 23일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한지역

연번	제 한 지 역			비 고
	동 명	지 번	면적(㎡)	
기 정	현석동 구수동	현석동 1-31 일대	25,276.4	
변 경	현석동 구수동	현석동 1-31 일원	22,746.4	감 2,530㎡

2. 제한기간 : 고시일(2024.4.4.)로부터 3년(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기간연장 가능)

(※ 단,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·고시가 있을 경우 고시일까지)

3. 제한대상 행위

- 건축물의 건축
 -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
 - 「건축법」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
 - 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 건축물로의 전환
 -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
- 토지분할 (「건축법」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)

4. 제한적용 제외대상

-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이전 건축허가 접수되었거나 건축허가신고 등을 받아 진행중인 사업
-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대수선
-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

5. 제한 변경사유

- 우리 구 정비계획 수립 중인 구역에 대하여 용도지역·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함

※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도시계획과(☎02-3153-9395)에 비치하고 있음

6. 지형도면

- 마포구 현석동 1-31 일대

